

업무협약서

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김해장복)과 경상남도에서 「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」을 수탁 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-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경남센터)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과 욕구 중심 서비스 연계 및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력의 내용과 범위) 「김해장복」과 「경남센터」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홍보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2. 양 기관에서 의뢰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.
3.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중심 서비스개발을 위해 양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한다.

제2조(운영) 본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.

제3조(비용부담)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안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은 상호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5조(운영 및 협의조정) 상호 협력 및 교류에 있어 중요 사항은 합의에 의하여 각각 따로 정하고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협약서의 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서명문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4월 18일



관장 심우영

2017. 4. 18.



센터장 배진기

2017. 4. 18.